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16

발의연월일: 2024. 10. 4.

발 의 자:김도읍・김예지・김석기

유상범 • 장동혁 • 신동욱

백종헌 • 인요한 • 이헌승

구자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국 공공임대주택 사건·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57건에 불과했던 자연재해 사고가 2023년에는 16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,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82건이 발생함.

특히, 집중호우로 인한 승강기 우수 유입,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구 막힘, 강풍으로 인한 대형폐기물 전도로 차량이 파손되는 등 물적 피 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.

실제로 자연 재해로 인한 물적 피해 금액은 적게는 3억, 많게는 1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, 최근 5년간 총 50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며,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자연재해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

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자 함(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입주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할 것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 국가	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		
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			
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			
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			
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		
1. ·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3.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		
	및 재난 등으로부터 입주자등		
	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		
	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		
	<u>될 수 있도록 할 것</u>		
<u>3.</u> (생 략)	<u>4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